

산 립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산림소득증대사업 사업자 결정 및 사업비 검증 소홀

기 관 명 기장군

내 용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·군 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·군 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(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)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또한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(31.산림소득증대사업, Ⅲ.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, 2. 사업자선정단계, 나. 지자체)에서도 시·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,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, 자부담 능력 및 경영능력, 임원회의 승인의 결 등을 고려하여 선정(시·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) 하도록 하고 있다.

같은 규정 제53조의2제8항에 따라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·출금이 가능한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(지로를 포함한다) 또는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. 지원대상자는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통합관리망에 제

출하여야 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
2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,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

○○○은 기장군에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아래 【표】와 같이 기장군에 접수(○○과-0000호, 2015. 0. 00.)함에 따라, 기장군(○○과)은 부산광역시○○○○에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사업성 검토를 의뢰(○○과-0000호, 2015. 0. 00.) 하였다.

【표】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신청자	사업명	사업예정지	세부사업명	합 계	보 조	대 출	지방비	자부담
○○○	산림소득 증대사업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번지	합계	221.45	44.29	44.29	44.29	88.58
			배지배양시설 ¹⁴⁸⁾ (○○○연동하우스)	52.96	10.592	10.592	10.592	21.184
			배지생산시설 ¹⁾	138.49	27.698	27.698	27.698	55.396
			표고자목(배지) 구입비	30	6	6	6	12

이에 따라 부산광역시○○○○은 ○○○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 ‘○○○의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현지확인 결과 사업능력, 사업계획 및 입지여건 등이 양호하여, 사업전망 또한 표고버섯의 맛과 영양 등 웰빙열풍으로 사업전망이 좋음’으로 회신(부산광역시○○○○-0000호, 2015. 0. 00.호)을 하였다.

148) 배지배양시설 및 배지생산시설은 2016.12.16. 산림소득증대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함

기장군은 부산광역시○○○○에서 제출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시·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,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‘시·군 등의 농림축산심의회’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, 심의회 상정없이 ○○○을 총 사업비 22.45백만원(보조 88.18, 대출 44.29, 지방비 44.29, 자부담 88.58)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(○○과-00000호, 2015. 00. 00)한 바 있다.

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 후 ○○○의 보조금청구서(1차, 표고배지 구입)가 접수되어(○○○○과-0000호, 2016. 0. 00.) 기장군은 ‘201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청구에 따른 검토결과’ 보고서에 ○○○의 금회 청구분 서류검토(○○○에게 16,443,000원 계좌이체) 및 현장확인결과 적정하여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 금회 청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2016. 6. 3. ○○○에게 6,577,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.

또한 ○○○의 보조금청구서(2차, 표고배지 구입)가 접수(○○○○과-0000호, 2016. 00. 0.)되어 기장군은 ‘201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청구(2차)에 따른 검토결과’ 보고서에 금회 청구분 서류검토결과 적정하여 금회 청구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2016. 12. 9. ○○○에게 6,090,000원을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.

그러나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(○○○)에게 임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, 기장군에서는 ○○○이 ○○○에게 지급한 31,668,000원의 금융기관 거래자

료만이 제출 되었는데도 사업집행에 따른 증빙자료로 그대로 인정하였다.

또한 ○○○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 시 사업예정지(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번지¹⁴⁹⁾)가 신청인 소유인지를 확인하고, 신청인 소유가 아닐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하는데도,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결정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[시정]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32조제4항 및 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」에 따라 사업자금 및 자부담집행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49) 토지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결과 ○○○의 남편 소유 토지로 확인 됨